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05,125,169	51,153,755
일반회계	1,518,227,908	45,546,837
특별회계	186,897,261	5,606,918
공기업특별회계	149,226,112	4,476,7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9,598,674	1,787,96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6,607,568	2,598,22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019,870	90,596
기타특별회계	37,671,149	1,130,134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532,182	255,965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02,097	102,063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14,707,846	441,235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11,029,024	330,871

제 2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5년도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25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25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5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4,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제 9 조 (간주처리)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